

이므로 국회나 정부에게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건의하여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셋째, 부칙 제1항(시행일)에 대한 의견

○ 동 조례 부칙 제1항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소급 입법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법률불소급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믿고 따르던 선의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조례의 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선의의 납부의무자를 보호코자 하는 동 부칙은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이와 같은 소급 입법은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급시행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가. 수정이유

○ 안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부담금의 부과율을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과율을 조례로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차등 적용하며

○ 단지내 상가 등 주택이외의 시설에 대한 부과율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부담금의 부과율을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100분의 2(안 제3조제2항가호)

○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안 제3조제2항나호)

○ 주택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4(안 제3조제2항다호)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사업장"을 "자동차 전시용 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매매업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가, 나,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100분의 2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

다. 주택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4

○별지 제5호서식 5-1중 “구분”란과 “부과율”란의 기재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5-2 “구분”란중 “전용면적과 부과율”란의 기재사항을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 2 장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100분의 2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

다. 주택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4

제4조(부담금의 부과)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고지서에는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 하는 때에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납부 회수는 2회로 한다.
2.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한다.
3. 납부 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8조(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등의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12조(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4.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1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도, 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변경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에 고지된 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2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일		
⑨ 분납희망일	년 월 일	
⑩ 분납금액		
⑪ 분납사유		
<p>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구비서류 :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1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			
⑨ 신청요지			
⑩ 신청사유			
<p>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4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사업지위치	대지면적(m <sup>2</sup> )	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	지역( )	지구( )	구역( )
부과근거 규정	<input type="checkbox"/> 택지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지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	<input type="checkbox"/> 최초 승인·인가·허가 <input type="checkbox"/> 변경 승인·인가·허가 <input type="checkbox"/> 준공검사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용검사 신청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분	종전(최초)내역(m <sup>2</sup> )	변경내역(m <sup>2</sup>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예 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m <sup>2</sup> )	변경내역(m <sup>2</sup> )
② 전제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외면적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③ 제외면적 계	
④ 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용적률 내역 : ⑤(            )%

[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	원	원
⑥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⑦부담금	원	원
공제액(⑥)	원	원
⑧경감율	(        )%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⑦ - ⑥) × ⑧]	원	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226,000원/m<sup>2</sup>)×부과율(15%)×개발면적(④)×용적률(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5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사업지위치		대지면적(m <sup>2</sup> )		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	지역( )	지구( )	구역( )	
부과근거 규정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보사유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분	종전(최초)내역(m <sup>2</sup> )	변경내역(m <sup>2</sup>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중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	원	원
⑭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중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⑮부 담 금	원	원
- 주택부문 부과액	원	원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	원	원
공 제 액(⑭)	원	원
⑯경 감 률	( )%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⑭-⑮)×⑯]	원	원

주 : ⑯경감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8

2001. 6.  
재정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김홍권)

가.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부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01. 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여의도전시판매장부지의 무상대부를 허가하여 우리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의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대부

다. 무상대부 재산현황

- 명 칭 :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3-1 일부 (구 안보전시장)
  - 규 모 : 대지 2필지 26,562㎡(8,035평)  
※시설물 : 3,913평(전시장 2,818평, 판매장 608평, 기타 487평)
  - 전시장 : 에어돔
  - 판매장 및 기타 : 가설건축물
  - 대부기간 : 2001. 7. 1 ~ 2001. 12. 31까지
- 라.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